


<h1>대학평의원회 회의록</h1>		결재	의장
			
2018년 6월 22일 금요일 12:30 ~ 15:30		장소	집현관10층 소회의실

안건 총장선출제도 마련 논의 등의 대학발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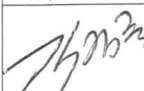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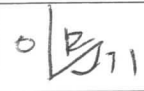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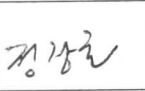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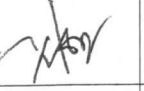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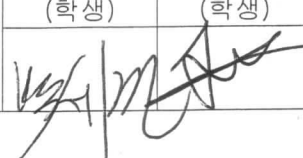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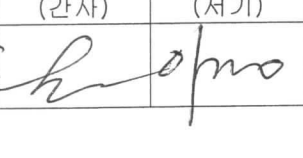
1. 회의 내용

○ 최석림 의장 : 회의 시작 전에 대기하고 있던 본 안건 관련 논의를 최초로 요구한 이순재 교협회장을 입장시켜 설명을 듣기로 함

○ 이순재 교협회장 : " 5월30일 성명서를 통해서 언급한 최근 불미스러운 신규 총장 형사 기소건에 대해서 대학발전계획 관련 대학 4주체가 모인 대학평의원회에 총장선출제도 논의를 요청하였음을 설명함. 평의원회 안건 첨부1의 최근 직선제를 통하여 총장을 선출한 이화여대 성신여대 사례를 설명하며 법인에 '우리 대학도 발전적으로 총장선출방식을 직선제로 하는 것을 건의'했다고 하면서 이번 총장 선출은 교수, 직원, 학생, 동문의 4자 협의체를 통해서 선출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함. 다만 우려될 수 있는 각 주체간 투표 반영비율은 평의원회에서 논의하거나 4자 협의체를 통해서 비율을 조정하면 좋은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 생각함. 평의원회에서 진지한 논의를 해 줄 것을 바라며 설명을 마침. 이어진 최석림 의장의 직선제 대학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중 '우리의 경우는 불행하게도 총장이 검찰 기소까지 갔는데 이는 총장 선출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답변함. 의장의 예전 총추위 구성비율에 대한 질의에는 김재철 부의장이 '기안을 보면 9:3:3:3 이었다'고 대신하여 답함. 이순재 교협회장 퇴장함

○ 최석림 의장 : 안건에 대해서 발의한 김재철 부의장에게 취지 설명을 요청함

○ 김재철 부의장 : 다음과 같이 안건의 취지 발언을 함. 2013년 교육부 감사결과에서 안건의 불임3. 8번. 소송비용 등 교비집행 부적정으로 1억6천89만2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해서 학교법인과 세종대학교가 총 15명이 경고를 받았고, 교비회계에 세입조치 하였음. 이때 감사에서 지적받았음에도 또다시 총장이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었다는 것은 아주 불행하다고 볼 수 있다. 대양학원 정관을 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정관 48조 1항 여기서 '직위해제'는 강행 규정이므로, 법인에서 직위해제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위해제 된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예로 형사사건으로 그날부로 퇴직한다고 했을 때 퇴직명령이 없었다고 해서 다음날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때, 총장이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인 상태다. 그런 것들을 법무감사실장이 해야지 (총장선출제도 마련 등) 대학발전계획을 논하자고 하는데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은 부적절하다. 법인에서 직위해제를 하지 않으려면 정관을 개정하면 되는데 정관을 개정하지 않았다.

의원 및 간사	김경중 (교원)	이문기 (교원)	정장호 (교원)	홍우영 (교원)	김재철 (직원)	김성규 (직원)	장덕상 (동문)	이재욱 (동문)
								
	박세경 (학생)	이응준 (학생)	이수열 (간사)	이기영 (서기)				
								

회의내용

- 따라서 법인에서 이사장님이 (직위해제를 않거나 정관을 개정치 않는다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에 최석림 의장은 '총장님은 교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김재철 부의장은 '총장은 교원'이라 답변함.(고등교육법 제14조 1,2항 및 교육부 답변 참조)
- 김재철 부의장 : 안건의 취지 발언에 이어 건의 발언을 하다. 6월 20일 구성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세종 가족 모두가 주인이 되는 세종대를 만듭시다."제목의 유인물을 "<대학발전 및 총장 직선제 건의> 세종 가족 모두가 주인이 되는 세종대를 만듭시다"라는 제목으로 평의원들에게 배포하고 낭독함. 평의원회에서 총장 선출 관련하여 현 총장의 전철을 밝지 않도록 구성원들이 투표 등으로 총장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건의할 것을 제안함
  - 장덕상 의원 : 당초 회의를 6월 20일로 정했다가 6월 22일로 변경한 경위에 대해서 의장에게 설명을 요청함
  - 최석림 의장 : 4인이 소집 요청했다고 김재철 부의장에게 듣고 전체 평의원에게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메일을 보냈으나 3인에게서 회신이 지난주에 왔고, 월요일(18.월)에 보니까 한분이 더 회신(17.일) 하였음을 설명함. 20일 개최는 회의 개최 3일전에 공지해야 하는 규정상 촉박하여 21일과 22일 양일중에 평의원이 많이 참석하실 수 있는 22일로 선택하였음을 설명함
  - 이재욱 의원 :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문자로도 같이 보내 줄 것을 요청함
  - 김재철 부의장 : (의장은 이사회가 열린다는 것을 처음 들었다고 하지만) 동문평의원의 발언을 듣고 보니 의장이 6.21.이사회에 평의원회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당초의 6.20.평의원회를 의도적으로 1~2일 지연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함
  - 홍우영 의원 : 평의원 간 갈등보다는 대화와 소통을 회의를 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권위를 존중하며 회의를 할 것을 제안함.
  - 최석림 의장 : 김재철 부의장이 준비한 총장선출제도 마련 논의에 대하여는 대학평의원회 규정과 법무감사실장의 자문 의견으로 볼 때 평의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생각함을 설명함
  - 이재욱 의원 : 총장선출 제도에 관한 논의는 대학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며 대학평의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장덕상 의원 : 대학 4주체가 대화하는 회의는 대학평의원회가 유일함을 설명함. 현재의 대학의 상황에서 총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학 발전 계획에 해당하므로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음을 설명함
  - 정장호 의원 : 총장님이 보낸 이메일과 학생회에서 2번에 걸쳐 발표한 입장문을 읽었음을 설명함. 총장 선출은 정관상 법인의 고유 권한임을 설명함. 각 4주체의 입장이 대변될 수 있는 안건이 나와야 논의의 정당성과 함께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장덕상 의원 :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 구성원의 의견을 법인에 건의할 수 있음을 설명함
  - 김재철 부의장 :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 법인에 건의하자는 것이며, 총장은 법인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음을 설명함

	김경중 (교원)	이문기 (교원)	정장호 (교원)	홍우영 (교원)	김재철 (직원)	김성규 (직원)	장덕상 (동문)	이재욱 (동문)
의원 및 간사								
	박세경 (학생)	이응준 (학생)	이수열 (간사)	이기영 (서기)	최석림 (의장)			

회 의 내 용

- 최석림 의장 :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는 각 4주체 구성 단체에서 해야 할 일임을 설명함. 대학평의회는 규정상 명시되어 있는 기능에 대하여만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임을 설명함
- 이재욱 의원 : 총장선출 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는 대학 발전계획에 해당하며 오늘 논의를 통해 평의회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고 주장함
- 장덕상 의원 : 의장은 평의원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회의를 진행하신 후 마지막에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건의함
- 김재철 부의장 : 대학평의회에서조차 이러한 논의나 건의를 하지 못한다면 학교에서 다른 혼란이 생길 수 있음을 설명함
- 박세경 의원 : 회의 진행을 위해 총장 선출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안건으로 상정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수결로 정할 것을 제안함
- 김성규 의원 : 본 안건에 대한 법무감사실장의 의견서는 평의회 안건으로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의장님이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법무감사실장의 의견서에 대한 입장이 평의원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 제출된 의견서와 무관하게 평의회 규정을 몇 번에 걸쳐 검토해 보았으나 정확히 본 안건을 다룰 수 있다고 규정하는 조항을 찾을 수가 없었음. 만약, 대학발전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본 안건에 대한 논의를 하였는데, 추후 위법한 일을 한 것이 된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이에, 제출된 안건이 평의회에서 논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 김재철 부의장 : 총장 선출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에 대하여 법인에 건의하는 것이 불법일 수는 없다고 설명함
- 장덕상, 이재욱 의원 : 평의회에서 이러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함을 설명함
- 김성규 의원 : 오랜 시간 평의회에는 제출된 안건을 논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만 지속되고 있다. 아무리 규정을 살펴봐도 평의회 기능, 평의원의 역할 등 관련지어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보인다. 다만, 규정에서 현재 평의원들이 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것을 굳이 찾아보자면 평의회 규정을 제/개정 하는 것 정도는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함
- 이문기 의원 : 법무감사실장의 자문 의견을 보면 첫째, 이 안건은 대학 발전계획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둘째 심의사항에 관한 규정은 한정적으로 열거해 놓았기에 확대 또는 축소 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했음을 설명함. 이러한 두가지 의견을 고려할 때 안건 상정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을 설명함
- 김경중 의원 : 총장 선출제도 마련이 대학 발전계획에 해당된다면 대학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이 평의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함
- 장덕상 의원 : 평의회에서는 직선제가 아니더라도 총장 선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기록을 남김으로써 외부에는 학교에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음을 설명함

	김경중 (교원)	이문기 (교원)	정장호 (교원)	홍우영 (교원)	김재철 (직원)	김성규 (직원)	장덕상 (동문)	이재욱 (동문)
의원 및 간사								
	박세경 (학생)	이응준 (학생)	이수열 (간사)	이기영 (서기)	최석림 (의장)			

회 의 내 용

- 이응준 의원 : 대학발전을 위해 4개 구성원의 대표기구인 평의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으며, 평의원회에서 논의할 수 없다면 오히려 외부에서 더 시끄러워질 수 있음을 설명함
  - 김경중 의원 : 평의원회 규정을 봐서는 안건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으며, 구성원간에 합의된 사항이 아닌 건을 평의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는 것은 부담이 된다고 설명함
  - 박세경 의원 : 대학 발전을 위한 건의를 하지 못한다면 대학평의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설명함
  - 장덕상 의원 : 현재 발생한 대학의 나쁜 상황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평의원회에서 논의해야 함을 설명함
  - 김성규 의원 : 제출된 안건에 대한 의견이 부분한바, 대학평의원회에서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논의한 내용을 회의록에 남기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함.
  - 김재철 부의장 : 논의만 하면 의미가 없음을 설명함. 구성원이 총장 선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법인에 건의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함
  - 박세경 의원 :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하여 평의원들의 표결을 통해서 결정할 것을 제시함
  - 최석림 의장 : '소결'에 나온 내용을 순화해서 총장 선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법인에 평의원회 명의로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찬반투표 할 것을 제안함
2. 투표 결과
- 투표 결과 찬성 7표, 반대 4표로 찬성표가 과반을 넘었음을 평의원들이 확인함
  - 총장 선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법인에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함.
  - 건의서의 초안은 김재철 부의장이 작성하고 작성된 안을 최석림 의장에게 먼저 전달한 후 평의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회람토록 한 후 평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완성하기로 함
3. 폐회선언
- 의장은 회의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함
4. 회의자료
- 붙임 : 1. 2018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안건 1부.  
 2. (김재철 부의장의) '대학발전 및 총장 직선제 건의' 발언문 1부.  
 3. 법무감사실장 의견서 1부.  
 4. 건의서 1부. 끝

	김경중 (교원)	이문기 (교원)	정장호 (교원)	홍우영 (교원)	김재철 (직원)	김성규 (직원)	장덕상 (동문)	이재욱 (동문)
의원								
및								
간사	박세경 (학생)	이응준 (학생)	이수열 (간사)	이기영 (서기)	최석림 (의장)			